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에 따라 자격시험 절차, 서식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절차(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등)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와 제출서류 서식을 규정함

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53조의4, 별표 8)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규정(안 별표 11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30. ~ 10.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에 대한 심사 예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4장에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응시원서)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53조의3(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20조의4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증의 분실·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6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

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8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등: 2024년 1월 5일

별표 8의 제목 중 “(제9조의2, 제19조, 제42조 및 제48조 관련)”을 “(제9조의2, 제19조, 제42조, 제48조 및 제53조의4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3호	자격취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4호	자격정지 (180일)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의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3조의2 관련)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외항선 “이라 한다)의 사업장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내항선 “이라 한다)의 사업장
자격 기준	안전관리 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에 12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에 6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관리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3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에 6년 이상 선박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인원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 자	4척 이하: 2척당 1명 이상	8척 이하: 4척당 1명 이상
			9척 이상 15척 이하: 5척당 1명 이상
		5척 이상: 3척당 1명 이상	16척 이상: 6척당 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2. 하나의 사업장에 외항선과 내항선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안전관리책임자: 외항선의 기준을 적용한다.
 - 나. 안전관리자: 내항선 및 외항선의 자격기준 및 인원을 각각 적용한다.
3. 사업장 소속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원서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번 호		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험 면 제				
해 당 사 유				확인자 (인)
면 제 과 목				
「해사안전법」 제6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수수료

..... (자르는 선)

응 시 표					
응 시 번 호		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 제 과 목					
시 험 일 시	20	년	월	일	시험장소

제 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자 격 등 급 :
4. 자격취득연월일 :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위 사람은 「해사안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선박안전관리사 급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 본 자격증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① <u>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u> <u><신 설></u>	제33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① <u>법 제46조의2제6항</u> ----- ----- -----.
<u><신 설></u>	<u>제53조의2(응시원서)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u> <u>제53조의3(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20조의4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증의 분실·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신 설> 제5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 다. 1. · 2. 삭 제 3. ~ 11. (생 략) <신 설> 12. ~ 13. (생 략)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별 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6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 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3.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자의 자격기준 등: 2024년 1월 5일 12. ~ 13. (현행과 같음)
---	---